



※ 출처증명서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기존허가된 경우는 소지허가증

나. 소지허가된 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으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동 허가증 반납증명서

다.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

라.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작증명서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